

2024년도 산림소득사업(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) 공모

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·현대화로 효율적인 임업 경영을 유도하고자 산림소득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임업후계자, 독립가, 신지식임업인, 생산자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3. 4. 21.

산 립 청 장



I

사업별 공모 내용

□ 2024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

(단위 : 억원)

사 업 명	예산 규모				지원조건(%) (국:지:자)	신청 규모 (총 사업비)
	총사업비	국고	지방비	자부담		
계	380	152	76	152		
산림작물생산단지	250	100	50	100	40:20:40	(노지재배) 1억~5억원 이하 (시설재배) 1억~7억원 이하
산림복합경영단지	130	52	26	52	40:20:40	1억~5억원 이하

* '24년 예산요구(안)으로 기재부, 국회 등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* 사업기간 : 산림작물생산단지, 산림복합경영단지 1~2년간 분할지원

□ 공모 기간 : 2023. 4. 24. ~ 6. 23.(61일간)

□ 신청 자격 : 임업후계자, 독립가, 신지식임업인, 생산자단체

< 자격별 세부기준 >

○ 사업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 중인 임업후계자, 독립가, 신지식임업인(이하 '임업후계자 등')

○ 생산자단체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2호 및 제5호의 생산자단체로서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“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”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
-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
 -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,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
 -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“참여”하고,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
 - * “참여” : 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,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
 -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,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
 -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,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
 -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,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제9항을 적용

※ 자격, 실적 등은 사업신청일(마감일 6.23) 기준으로 확인

※ 4~5페이지의 증빙서류 참조

<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>

*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 및 제79조 준용

◆ 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2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, 제78조 준용

- (5년)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
- (3년)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
- (2년)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
-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, 사업변경,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,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(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)

◆ (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)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

- 뚝은감 : (사)한국뚝은감협회(02-2080-6352)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(시·군 담당자)

- ◆ **동일사업***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
 - * 동일사업 :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의 유사자금의 개념으로,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(토지, 건축 등)에 투자되는 것을 말하며(최근 5년 이내) **농림축산식품사업을 대상으로 함 (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·산림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·관리하거나 감독권한이 있는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)**. 단,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5년간 이전 지원성과를 평가하여 최대 3회까지 지원가능
→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 적용
- ◆ **산림소득분야(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) 공모사업으로 지원(준공기준)받은 이후 3년(2023년 1월 1일 기준)이 지나지 않은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 단체**
- ◆ **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에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지,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가 포함된 경우**
 - * 숲가꾸기 사업 중 풀베기, 덩굴류제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, 어린 나무가꾸기는 준공 후 3년이 경과하고 추가 숲가꾸기가 필요한 지역은 가능

□ 지원대상 품목(공통)

종류(79개)	품 목 명
수실류(14개)	밤·감(뽕은감)·잣·호두·대추·은행·도토리·개암·머루·다래·산딸기·복분자딸기·석류·돌배
버섯류(8개)	표고·송이·목이·석이·능이·싸리·꽃송이버섯·복령
산나물류(12개)	더덕·고사리·도라지·취나물·참나물·두릅·원추리·산마늘·고려엉겅퀴(곤드레)·고비·어수리·눈개승마(삼나물)
약초류(18개)	삼지구엽초·삼주·참쑥·시호·작약·천마·산양삼·결명자·구절초·약모밀·당귀·천궁·하수오·감초·독활·잔대·백운풀·마
약용류(20개)	오미자·오갈피나무·산수유나무·구기자나무·두충나무·헛개나무·옴나무·참죽나무·산초나무·초피나무·옻나무·골담초·산겨릅나무·산사나무·느릅나무·황칠나무·꾸지뽕나무·마가목·화살나무·목단
수목부산물류(1개)	수액(樹液), 나뭇잎, 나뭇가지, 나무껍질, 나무뿌리, 나무순 등 나무(대나무류를 포함한다)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
관상산림식물류(6개)	야생화·자생란·조경수·분재·잔디·이끼류
그 밖의 임산물*	위 품목 외에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(목재제품을 포함한다)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

* ‘그 밖의 임산물’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

-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
-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(수실류, 버섯류, 산나물류 등)의 지원기준·지원내용 등을 준용
-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(양다래, 백수오, 오디, 차나무 등)
- 「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 제2호의 임산물생산업의 “그 밖의 임산물” 품목 가능(산림청고시 제2022-87호, 2022. 9. 30)

II

응모 방법 및 제출 서류

□ 응모 방법(사업 신청자 → 시·군·구 산림부서 → 시·도)

- 사업신청자는 공모사업 신청서(붙임 1) 및 계획서(붙임 7)를 시·군·구 산림부서에 접수 → 시·군·구에서는 신청서 및 계획서를 검토·심의 후 시·도에 제출(전자결재 공문)
-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지적 재산권 등 법적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

□ 제출 서류

<신청자 → 시·군·구>

-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(붙임 1) 및 사업계획서(붙임 7)
- 첨부·증빙서류
 - 임업후계자 등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생산자단체 현황·운영 실적 등 : 법인 등기부등본, 자본금(출자금) 내역,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, 농업인 확인서, '참여' 증명서류 (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, 근로계약서 등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) 등
 - *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제9항 <별표 6>에 따른 지원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부지 확보가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: 대상토지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받은 토지여야 하며,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.
[단, 임업후계자 등 개인에 한해 '등기 비대상 시설물'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]
 - * 단, 당해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목이 아니더라도 개별사업 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·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

- ⇒ 임업후계자 등의 경우 ‘등기 대상 시설물’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, ‘등기 비대상 시설물’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
- ⇒ 생산자단체의 경우 ‘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’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; 「기본규정」 별표6 ‘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’

①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

- **자부담금 확보**가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- 기타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**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**
 - * (재배경력 확인 서류) 경영체 등록 확인서,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·납품 확인증, 소득금액 증명원 등 임업경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

<시·군·구 → 시·도> * 사업 관련 신청·검토·확인 등 자료 보관 : 지자체

- (1)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및 농식품사업 이력서 1부(붙임1, 2)
- (2)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및 사업성과 평가서 1부(붙임3, 4)
- (3)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부(붙임5)
- (4)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(붙임6)
- (5) 사업별 계획서 3부(붙임7)
- (6)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
 - 관련사업 육성대책, 전문가 컨설팅 여부,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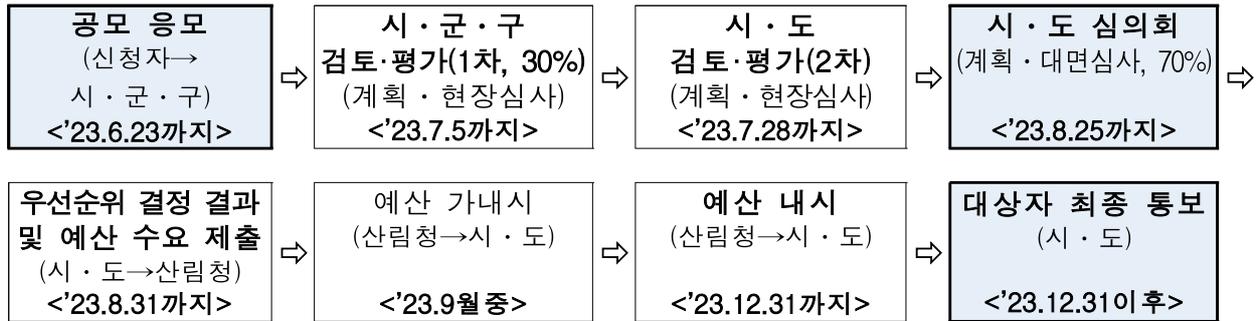
□ 제출 방법

- 사업 신청자는 해당 시·군·구(산림부서)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(제출서류 일체)
- 시·군·구는 시·도에 관련서류 일체를 전자 공문으로 제출

Ⅲ

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

□ 추진 절차



※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□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

- 시·도는 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 (외부전문가 3분의 2 이상)로 위원회를 구성하고,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,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·심의

* 위원회 구성은 산림소득 전문가(산림기술사, 한국임업진흥원 등)를 반드시 포함 하되, 성별·지역별·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

- 시·군·구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(30%)와 시·도 심의회에서 평가한 점수(70%)를 합산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

□ 검토 사항

- 사업 대상자,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지 등의 적정성
-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·판매 등 사업 전망
- 부지 및 사업비 확보, 인·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

□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열람

- 시·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는 신청자 요청 시 공개
- * 예산확정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통보

IV

참고(주의) 사항

- 사업 추진체계, 집행,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및 「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」 등에 따라 추진
 - '23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, '24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, 해당 지자체에 사전승인 후 추진 가능
 - *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내역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
-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시·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임업후계자 등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·변경할 수 있음 * 유통·가공시설은 지원 제외
- 사업연도 교부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됨
-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지연 또는 행정사항 미이행시 보조사업이 취소 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·정산 등은 e-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한 '예치형'으로 추진해야 함 *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24조제3항
-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은 보조금 관계 법령을 우선적으로 따르며,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계약법령을 따름
 - *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57조제1항 등
-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* 단,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
-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기간*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*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관리 기본규정」 [별표4]
-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지는 중요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

1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

□ 지원 규모

- 예산액 : 국고 100억 원(1~2년 분할 지원 가능) *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간 결정
* '24년 예산요구(안)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- 지원조건 : 국고 40%, 지방비 20%, 자부담 40%

□ 사업 목적

-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집단지화·현대화

□ 공모 내용

○ 품목별 신청 기준 면적

- 산나물·약용·약초·수실·수목부산물류 : 25,000㎡/개소 이상

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

- 버섯류 : (노지 : 송이산가꾸기 포함) 3,300㎡/개소 이상
(시설 : 재배시설, 톱밥배지 생산시설) 1,650㎡/개소 이상

- 관상산림식물류 : (시설) 1,000㎡/개소 이상, (노지) 10,000㎡/개소 이상

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

※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, 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

(예시) 약용류·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, 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,000㎡/개소 이상, 버섯류 3,300㎡/개소 이상이어야 함.

○ 신청 규모(총 사업비 기준)

- (노지재배) 1억원 ~ 5억원 이하, (시설재배) 1억원 ~ 7억원 이하

○ 지원대상 사업; <붙임 8>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, 유통·가공시설은 지원 제외

- 약용·약초류 : 산지정리작업, 울타리 등 감시시설, 관수시설, 작업로, 묘목식재, 종자파종 등
- 산나물류·수실류·수목부산물류 : 관수시설, 작업로 시설,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, 액비저장시설,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 등
- 산림버섯류 : 재배하우스·관정·관수·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
 - *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‘임업후계자, 독립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 또는 생산자단체’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(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, 임업인종합연수원, 관련대학 등)을 받은 자
 -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
 -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「종자산업법」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‘종자업’ 등록 및 ‘생산·수입판매 신고(필요시)’ 또는 통상실시 등을 한 자에 한하여 지원(자가소비는 제외)
 - * 송이산가꾸기는 낙엽긋기, 가지치기, 간벌 및 관수시설 등 지원
- 관상산림식물류 :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, 하우스, 관수시설, 자동화 시설, 분재 수출 생산시설, 포트묘 생산시설,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

※ 저장·건조시설

구 분	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
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	시설규모(연면적) 100㎡ 이하로,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100백만원 미만

□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

- 총 사업비는 설계·감리비(8% 이하), 기반 조성비(55% 이상), 식재 인건비(10% 이하), 종자·묘목 구입비(20% 이하), 기타 부대비(7% 이하) 등으로 구성

- * 다만,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(객관적 자료 제시)
- *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리 선임
- * 설계·감리비는 예산 편성지침의 공사부문·공사비에 따른 요율 적용 가능
- *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% 이하로 가능하며,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(절토, 성토 등)은 지원 제외(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)
- * <붙임 6>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하여 작성
- *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
- * 산양삼 단지 경우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: 전문기관(한국 임업진흥원)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 (총 사업비 20%범위 내에서 20만원/kg 이하로 지원)
- *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, 컨설팅, 정산보고서 검증 등에 소요 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. 다만, 인·허가 및 측량 비용 등은 지원 안됨.

□ 사업 추진 방법

- 선정된 사업자는 '23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, 단가, 세부사업내역 등을 '24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, 사업계획서 재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·사전승인 후 설계 등 사업 추진

※ 「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 품셈」 활용 : 요율 및 타 분야 지침관련 사항은 현행화 활용

※ 사업 추진 중 규모, 사업비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받고 시행

2 |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

□ 지원 규모

- 예 산 액 : 국고 52억원(1~2년간 분할 지원) *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간 결정
 - * '23년 예산요구(안)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- 지원조건 : 국고 40%, 지방비 20%, 자부담 40%

□ 사업 목적

- 숲가꾸기(모두베기 아님) 등 산림사업을 통해 숲을 가꾸면서, 하층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이 가능하도록 복합경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: 대상지 전체에 숲가꾸기 사업 및 단기소득임산물 생산

□ 공모 내용

- 신청 기준 면적 : 복합경영이 가능한 연결된 산림으로 품목별 신청 기준 면적을 충족

○ 품목별 신청 기준 면적

- 산나물·약용·약초·수실·수목부산물류 : 25,000m²/개소 이상

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

- 버섯류 : (노지 : 송이산가꾸기 포함) 3,300m²/개소 이상

- 관상산림식물류 : 10,000m²/개소 이상

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

- * 숲가꾸기(모두베기 아님)가 가능한 사업지만 대상으로 인정하며, 전체 면적에 숲가꾸기 사업을 계획·실행하고,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를 계획·실행해야 함
 - 모두베기 실행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하며, 조림이 완료된 경우 포함 가능
 - 숲가꾸기는 기존 입목에 대한 것이며, 해당 공모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, 가지치기 등이 아님
 -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지는 산림작물생산단지로 신청(어린나무가꾸기 준공 후 3년이 경과하고 추가 숲가꾸기가 필요한 지역은 가능)
- *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또는 연결지에서 숲가꾸기 사업(모두베기 아님)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부서와 사전 협의 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

- 이 경우 파쇄, 훈증,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

- 신청 규모(총 사업비 기준) : 1억원 이상 ~ 5억원 이하(1~2년간 분할지원)
- 지원대상 사업(숲가꾸기 + 생산기반) ; <붙임 8>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, 유통·가공시설은 지원 제외
 - (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) 솜아베기, 천연림보육, 풀베기, 덩굴제거, 가지치기, 어린나무가꾸기, 산물수집 등
 - * 해당 공모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, 가지치기 등 관리비용은 지원 대상 아님 : 숲가꾸기 사업 대상 아님
 - * 산림자원육성·관리(농특) 예산의 ‘숲가꾸기사업’을 이미 완료한 임지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원
 - *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없이 하층의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임
 - (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) 종자 및 종근 구입, 산지 묘포장 조성, 임내정리 및 식재, 관수시설, 보호울타리, 작업로, 감시시설, 모노레일, 액비저장시설,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 등
 - *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활용하여 재배를 하려는 경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 아님 →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

※ 저장·건조시설

구 분	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
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	시설규모(연면적) 100㎡ 이하로,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100백만원 미만

□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

- 총 사업비 중 20% 이하로 숲가꾸기(솜아베기, 천연림보육, 어린나무가꾸기, 산물수집 등) 가능하며, 잔액(총사업비 80% 이상) 기준으로 기반 조성비(55% 이상), 설계·감리비(8% 이하), 식재인건비(10%이하), 종자·묘목구입비(20% 이하), 기타 부대비(7% 이하) 내에서 구성
 - * 다만,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(객관적 자료 제시, 숲가꾸기 사업은 가급적 사업시행전 농특예산 ‘숲가꾸기’와 연계하여 선행)
 - *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리 선임

- * 설계·감리비는 예산 편성지침의 공사부문·공사비에 따른 요율 적용 가능
- *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% 이하로 가능하며,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(절토, 성토 등)은 지원 제외(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)
- * <붙임 6>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하여 작성
- *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
- * 산양삼 단지 경우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: 전문기관(한국 임업진흥원)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를 총 사업비 20%범위 내에서 20만원/kg 이하로 지원
- *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, 컨설팅, 정산보고서 검증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. 다만, 인·허가 및 측량 비용 등은 지원 안됨.

□ 사업 추진 방법

- 선정된 사업자는 '23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, 단가, 세부사업내역 등을 '24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(숲가꾸기 비율 제외) 추진코자 하는 경우, 사업계획서 재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·사전승인 후 설계 등 사업 추진
 - * 숲가꾸기는 「숲가꾸기 설계·감리 및 시행지침」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「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 품셈」을 참고하고 요율 등은 당해연도 것을 적용
 - * 사업 추진 중 규모, 사업비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받고 시행

- 붙임
1. 산림소득사업 공모신청서 1부.
 2.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1부.
 3. 사업성과 평가서 1부.
 4.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.
 5.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1부.
 6.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.
 7. 사업계획서 작성(예시) 각 1부.
 - (7-1)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계획서
 - (7-2)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계획서
 8.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1부.